

건설공사 기준의 향후 정비 추진계획



이영근*

1.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추진배경

건설공사에 있어서 표준시방서등 건설기준은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시험 등 자재품질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시공상태 및 허용오차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사전반에 걸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60년대부터 각종 시방서 및 건설기준 등을 제정,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기준은 그 특성상 공법, 장비, 자재 등 건설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제·개정 및 보완이 불가피하나, 지금까지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건설공사 기술기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도서의 일부로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시방서는 주요 공종이 상호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기준들이 산재해 있고, 각 기준간에

참조내용 및 수록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산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건설시장개방에 따라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매개체인 건설기준의 체계 정비는 기술력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준의 수준향상과 제·개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그간 정부가 관리해 오던 건설기준 55종(표준시방서 13종, 기술기준 42종)을 '95하반기부터 대한토목학회등 민간전문단체에 이관하고, 시방서등 건설기준 체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 건설공사기준의 현황

2.1 시방서

2.1.1 시방서의 운영체계

국내의 시방서 운영체계는 정부가 관리하는 13개의 시설물별 표준시방서가 있으며, 이러한 표준시방서에 각각의 공사마다 작성되는 특기시방서, 또는 특

* 정회원, 건설교통부 건설기준과장

별시방서를 첨부하여 건설공사의 계약 및 시공단계에 활용되어왔다. 그 중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여 각 학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를 포함한 10종이 있으며, 추가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농림부가 관리하는 농업토목공사 일반시방서가 있다.

표 1 현행 표준시방서 현황

관리주체	표준시방서(제정년도)
1. 대한토목학회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96)
2. 한국콘크리트학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96)
3. 한국지반공학회	
4. 한국도로교통협회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96) • 도로교 표준시방서(96)
5. 한국수자원학회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94)
6. 대한건축학회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97)
7. 대한디자인협회	• 디자인공사 표준시방서(96)
8. 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96)
9. 광기조화냉동공학회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96)
10.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건축설비설비공사 표준시방서(94)
11. 한국항만학회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96)
12. 한국수도협회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97)
13. 농어촌진흥공사	• 농업토목공사 일반시방서(87)

※ 각회장공시 표준시방서(98) 반경에 정

또한,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13종 표준시방서 이외에도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정부 제정 표준시방서들은 표준시방서에 특별시방서를 첨부하여 사용하는 형태로서 운용되어 왔으며,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정한 전문시방서들의 경우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일종의 가이드시방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것을 수정·편집하여 공사시방서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전문시방서가 없이 완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공사시방서 사용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시방서 적용현황에서 표준시방서는 대부분의 공공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관련 전문시방서 작성에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방서는 기술적 내용과 새로운 공종이나 공법 등에 대한 추가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개정하여 왔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각 시방서별로 동일한 공종에 대한 기술내용의 수준이 서로 다르고, 적용기준의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주기관별로 자체 공사발주 및 공사관리에 적합한 형태의 전문시방서를 보유하고 있고, 시방서 체계와 내역서 체계의 일치 등을 통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 외에는 건설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 발주기관이 자체 전문시방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다만 건설교통부에 의해 승인된 표준시방서를 인용하거나 참조하여 사용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별로 시방서와 실적공사비 식산방식에 의한 수량산출기준간 공종분류체계가 불일치되어 있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의 곤란 및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 존재 등 공사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제정 표준시방서는 국가 건설공사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각 학협회 보

표 2 국내의 시방서 운영체계

형태	시방서 종류	관리주체
□□□□□□	• 표준시방서	학·협회
□	• 전문시방서	발주기관(간교부·산하 정부투자기관 외에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없음)
□	• 특별(특기)시방서	발주기관

유 기술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표준시방서가 앞의 표 2에서처럼 공사시방서의 일부로서 인용되는 계약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표준시방서 간에 공종의 통합 및 조정작업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통합 및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2.1.2 현행 시방서 운영체계의 문제점

현행 시방서 운영체계의 문제점 중 공통되게 제시되는 사항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 간의 통일된 구조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가. 표준시방서 간 공종의 중복

국내 시방서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부제장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여 활용하는데 있어서 공사시방서의 적용기준에 앞의 표 1과 같이 관리된 표준시방서의 이름을 기재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표준시방서 간에 중복되는 공종에서 상충되는 기준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충기준은 건설공사에 적용할 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나.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의 부재

현행 가 표준시방서는 개별적으로 분류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표준시방서 간에 중복공종들이 많고, 통일된 공종분류체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공사시방서 작성이 곤란하다. 즉, 그 형태가 표준시방서들에 특기사항만을 침투하는 형태이든, 표준시방서들을 수정·편집하여 공사시방서로 만든 형태이든 간에 공종분류체계가 내역서 공종분류체계와 불일치한 상태에 있다.

다. 설계기준의 포함

콘크리트표준시방서('96), 도로교표준시방서('95)의 경우 설계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을 합분하여 재시합으로써 기준의 관리 및 활용상의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의 활용 주체와 기능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설계기준을 시방서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주체들간의 계약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계약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있다.

라. 편람식 구성

시방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감리원이나,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무 매뉴얼과는 구별되어야 하나, 터널공사 표준시방서('9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94)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특성상 공사편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계약문서로서 적용시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마. 해설의 포함

콘크리트표준시방서('96), 도로교표준시방서('95) 등 일부 표준시방서에는 해설이 포함되어 있고, 해설외의 본문은 직접 공사에 적용될 수 없는 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해설이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여 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본문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설로 기술해 놓은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해설을 직접적으로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클레임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마. 장·절 구성방식의 비흡

현행 일부 표준시방서의 '장', '절' 구성방식 등 번호 부여방법이 각 시방서별로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이하여 시방서의 개정 및 활용상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사. 용어의 불일치

각 표준시방서의 개정자가 서로 다른으로 말미암아 통일 사항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함께 계약문서의 일부로 인용될 경우 사용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방서 운영체계의 문제점은 현장사용자들의 사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 설계기준 및 기타 하위기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공사기준 중 표준시방서를 포함한 시공기준을 제외하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정부가 학협회에게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면 42종의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들과 각 학협

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설공사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제시된 각종 기준들이 있다.

42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들에 사용되는 명칭들은 사용상의 목적에 따라 설계기준, 지침, 편람, 표준도, 기술지도서, 요령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현행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원칙에 의하여 정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과 주체의 개별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또한, 건설공사기준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현행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기준들에 적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사례는 사전적인 정의 이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제기준 발전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서(1992년 10월)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구체화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 시방서를 포함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위에서 인용된 보고서에서 제시된 관련용어의 정의는 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접근한 용어의 정의이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기준 분류상에서 매우 형식적이고, 임의적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

시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표 3과 같다.

한편 현행 시방서를 제외한 건설공사기준 중 정부가 관리하는 기준을 기준 용어의 정의에 따라 기준, 지침, 편람, 표준도로 분류하여 보면, 기준이라고 명명된 건설공사기준들이 설계기준 뿐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관적으로 기준들이 명명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추진계획

3.1 건설공사기준 정비 추진계획

정부가 '60년대부터 관리해오던 건설기술기준 50종(표준시방서 12종, 설계기준 42종)을 '95년 7월부터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민간단체에 이관하고 종·단기적으로 시방서에 대한 전면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단기추진계획('97.10~'98.12)으로는 건설공사기준의 체계 정비에 목표를 설정하고, 현행 13종 표준시방서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고, 우선적으로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체계를 구축하여 중기계획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기추진계획 ('99.1~'2000.12)의 목표는 건설공사 기준체계의 정착으로 설정하여 건설공사 수행시, 현재 설정되어진 시방서 종류별 기능과 성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방서 운영체계와 공종별 세부 기술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부계획에 따라 다음 표 4의 시방서 체계 정비 마스터플랜과 표 5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었다.

표 3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기준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설계기준	시설물이나 사업에 대해 품질, 강도, 안전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를 설정하여 설계업무 수행시 설계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지침	시방서상에 기술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특별히 문이별로 작업방법 및 기타 작업에 관련되는 사항을 기록하여 망침을 방지하는 것.
편람	나일한 사항이 많으며 특별한 작업과 관련되지 않아 시방서에 기술하기에는 곤란한 사항들을 보기 위해 허도록 간결하게 만든 것.
표준도	교과, 암기, 응용 등 설계인도가 많고, 공법 및 설계기준 등 일반한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도면.
기술지도서	기술 및 장비력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설계기법 및 시험방법, 신재료 사용 등을 현장실무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토목재료의 시험방법, 아스팔트 포장의 설계와 시공)
요령	설계 및 시공의 새로운현방법 등에 대하여 현장기술자가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방서나 규격의 범위를 쉽게 풀이한 것.(공사감독 업무요령)

표 4 시방서 체계정비 마스터 플랜

분야	단계 항목	기 수행내용 (~97.10)	단기(97.10~98.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비)	중기(99.1~2000.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착)	역할분담
시방서 체계 정비	표준 시방서	○시방서체계 위계 설정 ○표준시방서 정비계획 및 작성요령 마련	○관리주체별로 표준시방서 정비지침에 의한 표준시방서 정비 ○표준시방서 영문번역 배포 ○표준시방서 관리주체 정비계획 검토 및 지속적 예산지원방안 마련	○관리주체별 표준시방서 정비 계속 ○표준시방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 수립 ○관리주체별 표준시방서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자체 시방서 관리체계 구축	정부 관리주체 전기원
	전문 시방서	○전문시방서 개념정립 및 작성요령 마련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마련 ○표준시방서 체계, 질 구성 및 내용기술방법 마련	○공방발주기관 전문시방서 표준(안) 마련 ○전문시방서 모니터링 및 보완 ○발주기관별 전문시방서 제정 유도	○전문시방서 체계의 지속적인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 ○전문시방서 전산시스템 구축 ○전문시방서 체계의 정착을 위한 발주기관별 전문가 지속적 확보	정부 발주기관 전기원
	공사 시방서		○공사시방서 적용을 위한 발주청 교육 실시 ○공사시방서 작성지침에 의한 공사시방서 작성 시행	○공사시방서 정착 유도	발주기관
제도 개선 및 기타 사항		○건설공사기준 운영관리 업무 학·협회 이관 ○관리주체 및 시방서 위계의 정립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발주청 배부 ○공사시방서 작성의무화 ○시방서 관리 및 기초연구 전담조직 설치	○건설공사기준 관리의 체계적 운영 ○건설공사기준 전산화 추진(용역회사, 발주청)	정부

표 5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기준 체계정비 마스터 플랜

단계 분야	기 수행내용 (~97.10)	단기(97.10~98.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비)	중기(99.1~2000.12) (건설공사기준 체계 정착)	역할분담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기준 체계 정비	○건설공사기준 체계 및 내용 정비방안 마련 -시방서와 건설공사기준을 설계기준과 기타하위기준으로 위계설정 -불요불급기준 통·폐합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구성방식 통일 ○건설공사 설계기준 정비방안 수립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관리주체 정비계획 및 지속적 예산지원 방안 마련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의 내용 및 체계 정비 ○건설공사기준 관리체계의 구축 및 체계적 운영	○건설공사기준의 지속적 세·개정 및 보완 ○건설공사기준 전산화 추진	정부 관리주체 전기원
제도 개선		○건설기준관리 전담기구 설치	○건설기준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제도정비	정부

3.2 시방서 정비방안

지금까지는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여 특기(특별)시방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시방서가 활용되어져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표준시방서'라는 용어는 학협회에서 관리하는 시방서를 지칭하기도 하고, 발주기관에서 자체공사의 발주 및 관리를 위해 작성하여 보유하는 시방서를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방서 운영체계를 정립하는 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방서 운영체계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표 6과 같은 시방서 종류별 용어의 개념 및 위계를 정립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는 건설기술관리법상에도 반영되어 시행규칙 제14조 2(설계도서의 작성)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표준시방서는 현행 표준시방서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간 학협회가 중심이 되어

일정한 주기로 개정·보완하는 시공기준이며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각종기준을 근거로 발주청이 특정한 건설공사의 전공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공기준으로 발주청이 작성하여 설계업자들이 공사시방서 작성시, 또는 계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공기준이다. 공사시방서는 개별적인 건설공사에서 계약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시공기준으로 '98년1월부터 시행토록 명시되었다.

표 6 시방서 종류별 용어 개념의 정립

종 류	개 담
표준시방서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한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

3.3 설계기준 및 기타 하위기준 정비방안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시방서등 시공기준을 제외한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의 정비는 크게 건설공사기준의 체계 및 내용정비를 통한 기준의 활용성 강화, 건설공사기준을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준의 사용성 확대, 현행 건설공사기준에 존재하는 기준간 상충문제의 해소라는 3가지 목표로 설정하였다.

먼저, 건설공사기준 체계 및 내용 정비를 통한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설계자와 시공자 등 건설기준 사용자들이 건설공사 수행시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건설공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기준체계를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현재 설계작업 수행시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설계기준에 대한 위상 및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업무에 충실히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중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사기준에 대하여는 통·폐합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공사기

준에 대한 체계적인 코드부여를 통하여 다양한 기준들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건설공사기준을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집필자들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건설공사기준의 구성방식을 설계기준과 기타하위기준(편람, 기술지도서, 표준도 등)의 존재형식에 따라 구성방식을 통일하여 사용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돋고, 건설공사기준 사용자가 실무에 편리하게 사용토록 업무프로세스에 결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클레임 발생 방지를 위한 상충문제 해소를 위하여, 건설공사기준간 상충기준과 상이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건설공사기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건설공사 계약도서 작성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준정비를 위하여, 건설공사기준 중에서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정하는 설계기준에 대한 활용성, 효율성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비를 추진하고, 나머지 기준들은 각 학협회와 발주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공사기준의 구성형식을 통일하여 건설기준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건설기준을 관리하는 조직은 매년 건설공사기준의 활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체 기준들에 대한 색인화 작업을 수행하여 이를 발간하여 건설업무수행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빈간에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건설공사기준들은 자체적인 심의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기준 관리기구에 등록하여 건설공사기준들간에 발생되는 상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공사기준의 정비방안은 설계기준의 비중을 강화시키고, 각 기준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등에 대한 신속한 반영과 지속적인 건설기준의 정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추가 기준제정시 손쉽고 체계적으로 추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 관리주체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가 관리하는 기준의 축소를 통하여 규제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협회에서는 건설공사기준 정비계획과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 정비방안에 따라 매년초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기준을 정비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에 있는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 론

'97년 1월 1일 국내 공공시장의 개방의 시점에서 현행 시방서를 포함한 건설공사기준은 표준시방서 구성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내용의 상호 중복 및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각 표준시방서간 기술기준의 상이 및 적용범위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현행 건설공사에서 각 학협회별로 제시되고 있는 콘크리트 관련 기준간 상이성은 분쟁의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건설공사기준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새로운 건설공사 기준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건설공사기준을 시공기준과 설계기준, 그리고 기타하위기준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기준간 기능 및 업무범위의 설정을 통하여 새로운 건설공사 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시공기준 중 시방서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분리하여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를 제외한 건설공사기준(42종)을 체계 및 기능에 따라 보다 명확히 분리하고 위계를 설정한다.

둘째. 건설시장개방에 따른 클레임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기준을 정비한다.

- 건설공사 기준간 상충내용 정비를 통하여 클레임을 방지한다.
- 건설공사 클레임 방지 및 효과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개개의 건설공사마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 건설공사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기타하위기준의 기능을 명확히 한다.
- 국가가 관리하는 설계기준의 형식과 내용의 통합정비를 통한 설계기준간 상이점을 정비한다.

셋째. 건설공사기준의 지속적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건설공사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리기능의 전문화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공사시방서(전문시방서)와 실적공사비 내역서 간 연계성을 확보한다.
- 건설공사기준 전산화를 통한 건설공사기준 사용자들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관리상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각 발주기관별로 자체 공사의 발주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주기관별로 기준의 상충문제 해소를 통한 클레임의 예방, 효율적인 공사시방서의 작성, 시방서 공종분류체계와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의 일치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들이 공사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형 공공공사 전문시방서를 작성할 경우, 기타 소규모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대형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의 전문시방서를 편집, 수정 및 보완하여 자체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이 자체 전문시방서를 보유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건설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편

리함과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기준정비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준정비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를 건설기술연구원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하고 향후 건설공사기준 관리체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미국의 CSI와 같은 가칭 건설기준관리센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된 시방서 체계와 건설공사 체계기준 정비방안을 바탕으로 건설공사기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시방서의 경우, 현행 13종 표준시방서의 기본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비를 수행하고, 우선적으로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체계

를 구축하며, 중기적으로 2천년까지 시방서를 비롯한 건설공사기준의 기능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종별 세부 기술기준을 보완하여야 하며, 각 학협회에서는 매년초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추진계획을 심의하여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내실있고,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공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하고 시방서 운영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방서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로서, 건설공사기준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